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<br><b>신한대학교</b> | 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| 규정번호 | 3-4-45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관리부서 | 대학원 교학팀 |

개정 2022.01.28.

개정 2025.10.16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한대학교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하여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총 정원제”란 “학과별 입학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위과정별 총 정원제로 운영” 하는것을 말한다.
2. “탄력 정원조정”이란 “총 정원 내에서 학과별로 탄력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” 하는 것을 말한다.
3. 삭제 <2024.02.29.>

**제2조의 2(직제)**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과 부원장, 부장, 팀장을 두고,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둔다.

②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.

[본조신설 2022.01.28.]

## 제2장 입학 및 등록

**제3조(입학정원 및 정원조정)** ① 신한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학칙 제5조의 입학정원은 총 정원제로 운영하며, 대학원 신입생의 학과별 최소단위는 5명으로 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학과별 최소단위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신입생의 입학에 취소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의 설립이념 및 발전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과별 최소단위에 미달하더라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에 허가 할 수 있다.

③ 학과별 탄력 정원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입학자 등록)**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등록 구분)** 제4조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정규등록 : 대학원 수업연한 내 교과목이나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기 위한 등록
2. 연구등록 : 대학원 수료 후 졸업논문, 외국어 시험 또는 종합시험 등 졸업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등록
3. 연구과정등록 : 대학원 연구과정의 연구생 등록

**제6조(등록금 등)** ① 대학원의 등록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연구 등록금 : 당해학기 대학원 등록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2. 연구과정 등록금 :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
- ②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대학원 등록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신한대학교 등록금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### 제3장 교육과정 및 수업

**제7조(학기별 학점취득)** ① 대학원생은 학기별로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.

- ②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대학원생은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학기별로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**제8조(집중학기제)**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칙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집중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교육과정 편성과 이수학점)**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| 구분          | 석사학위과정(논문)  | 석사학위과정(비논문) | 박사학위과정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졸업학점        | 24학점 이상     | 30학점 이상     | 36학점 이상          |
| 소속학과(전공) 과목 | 12학점 이상     | 15학점 이상     | 18학점 이상          |
| 타학과 과목      | 12학점 이내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선수 과목       | 학부에서 9학점 이상 |             | 학부·석사학위과정 9학점 이상 |

- ②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은 연간 이수학점의 30% 이내로 취득하여야 한다.<개정 2025.01.23., 2025.06.10.>

[전문개정 2022.06.17.]

**제10조(교과목의 학점 수)**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각 교과목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1조(교육과정 운영)** 대학원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사과목은 학과별로 중복 개설하지 아니하며, 전공간 유사과목은 통·폐합한다
2. 동일과목은 연속으로 개설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교과목의 설정과 변경)** ①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는 설정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6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(교과목의 개설)**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육과정 중에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을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개강일 2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개설 교과목 수와 수강 학생 수)** ① 대학원 과정별로 매 학기 최대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학과별 개설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매학기 개설가능 교과목 수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교과목별 수강생이 4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. 다만, 신설학과 및 폐과존치학과 의 경우 수강생이 3명 이하인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2.29.>

③ 계절학기의 경우 수강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 다만, 10명 미만이 계절학기를 신청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2.29.>

④ 매학기 한 학과에서 동일한 교강사로 편성할 수 있는 교과목은 2과목 이내로 한다. 단, 이중언어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5.10.16.>

**제15조(선수과목 이수)** ①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 비동일계열 입학자는 수료 전까지 선수과목을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수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②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는 학부에서,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는 학부나 석사학위과정에서 각각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원 학생이 선수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대학원 교학팀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선수과목의 이수 성적은 합격(P) 또는 불합격(F)으로 평가하여 성적표에 기재한다.

⑤ 타 대학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원 교학팀에 이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논문퍼블리싱과목)** ① 논문퍼블리싱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도교수별 1팀(4~5명) 이상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논문퍼블리싱과목의 이수구분은 P 또는 N으로 평가하고 3학점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하여 해당 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④ 논문퍼블리싱과목을 담당하는 경우, 해당 교과목의 학점 및 시간은 해당 교원의 책임시간 및 최대인정시간에서 제외한다. 단, 강의료는 대학원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으로 1팀당 1.5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.

⑤ 논문퍼블리싱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5.10.16.]

**제17조(수강신청 및 변경)** ① 대학원 학생은 학기별로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소정기간 내에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 학생은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 외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이나 수강신청 포기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유고결석, 공결)** 대학원 학생은 다음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그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출석 인정일수 범위 내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2.01.28., 개정 2025.01.23.>

| 결석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석인정기간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직계비속 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일                   |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|
| 나. 형제·자매, 배우자의 형제·자매, 조부모(외조부모), 배우자의 조부모(외조부모) 사망      | 3일                   |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|
| 다. 징병검사, 예비군훈련 등의 병역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일<br>(지방일 경우 3일)   | 신체검사 통지서<br>예비군교육훈련확인서  |
| 라. 본인의 결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일                   | 청첩장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본인의 질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일 이내               |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            |
| 바-1. 본인의 출산<br>바-2. 배우자의 출산<br>(출산일 포함하여 출산 전후로 신청)     | 바-1. 20일<br>바-2. 10일 |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<br>출생신고서 등 |
| 사.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, 학술(공연) 발표 |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| 관련 공문서                  |
| 아. 천재지변 및 감염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| 자가격리통지서 등               |

**제19조(시험)** 담당교수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여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한 경우 과제를 부여 등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

**제20조(성적평가)** 담당교수는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시험성적·과제물성적·출석성적·수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성적 평가표 제출)** ①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기일 이내에 학생의 성적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담당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(시험답안지, 과제물, 출석부 등)를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간강사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(시험답안지, 과제물, 출석부 등)를 성적정정기간 후 1주일 내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휴학·복학·자퇴·제적

**제22조(휴학구분)** 학생의 휴학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휴학 : 질병·사고·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
2. 군입대 휴학 :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
3. 육아 휴학 : 임신·출산 및 자녀양육(만 8세이하)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

**제23조(휴학절차)**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군입대 대상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신·편입생은 질병·병역·임신·출산 및 육아 외의 사유로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.

<개정 2025.01.23.>

**제24조(복학)**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.

② 복학하려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복학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원장은 군입대 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개강 후 4주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
**제25조(자퇴)**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제적)** 대학원장은 이 「학칙」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업일수 3분의 1이 지난 후 제적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 제적 처리한다. <개정 2024.02.29.>

## 제5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

**제27조(출제위원)** 대학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28조(출제 범위)**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24.02.29., 2025.10.16.>

1. 외국어시험 : 내국인 및 영어 이중언어과정 이수자는 영어로 실시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(TOPIK 또는 자체시험)으로 대체한다.
2. 종합시험 :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

**제29조(응시절차)**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전형방법, 전형절차 등의 공고에 관한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6장 학위논문과 심사

**제30조(논문계획서)**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3학기,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4학기, 통합과정 학생은 6학기까지 석·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석·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심사한 후 수정·보완하게 하고 학생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
③ 학위논문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일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생은 논문계획서를 신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명과학 기술 연구의 범위는 「신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」에 따른다.

④ 학생은 지도교수의 심사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·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

변경한 논문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1조(학위논문 구비사항)**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칙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.

**제32조(학위논문의 대체방법)** ① 학칙 제23조의2에 따른 석사학위 논문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과는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논문대체는 학생의 실기성적, 제작물 성적 및 보고서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의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한다.

③ 논문대체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는 학과에서 따로 정한다.

④ 학위논문 대체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4.02.29.>

1. 학위논문 대체 이수 확인서 및 최종 심사에 합격한 논문대체물
2. 심사결과 요지와 심사결과보고서
3. 논문대체물에 대한 유사도검사 결과서

**제33조(학위논문의 작성용어)** ①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영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한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34조(학위논문의 제출시기)**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로 한다.

② 학위논문 인쇄본의 제출시기는 7월말 또는 1월말까지로 한다.

**제35조(학위논문 제출연한)** ① 학위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6년, 박사학위과정은 10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.

② 군복무(의무복무)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③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.

**제36조(학위논문의 제출 부수와 절차)** 학위논문 제출 대상자는 학위논문심사청구 최종심사를 마친후 논문 전자파일 DCollection 업로드 및 규격에 맞게 인쇄된 학위논문 4부를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6.17., 2024.02.29.>

**제37조(공동논문 지도교수)** ①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퇴직하거나 휴직한 논문지도교수는 공동지도교수 신청원을 제출한 후 변경된 논문지도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의 권한은 변경된 논문지도교수에게 있으며, 공동논문지도교수는 자문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.

③ 연구년 중인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의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.

④ 공동논문지도 교수에게는 논문지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

## 제7장 지도교수

**제38조(지도교수 위촉)**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이 주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위촉한다.

② 제1항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소속 학과 교수 중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 사정에 따라 타 학과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39조(지도교수 변경)** ① 학생은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를 거쳐 “지도교수 변경원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.

**제40조(지도교수 연장)** ① 학생은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하는 경우(논문지도에 한하여) 퇴임일로부터 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02.2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년 이내에 명예교수·촉탁교수·특임교수 등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연장 받은 것으로 본다.

**제41조(지도교수 직무)**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하여야 한다.

**제42조(지도학생 인원)** ① 학과의 주임교수는 지도학생 배정 기준을 정하고, 교원이 지도할 학생을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인당 학생지도비를 책정하여 지도교수에게 지급한다. 이 경우 지도학생 1인당 매월 1회 상당한 내역에 한하여 지급한다.<개정 2024.02.29.>

③ 학생지도비는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상당한 내역에 한하여 지급한다.

[전문개정 2025.06.10.]

## 제8장 학위수여

**제43조(학위수여 사정)**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학위수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.

**제44조(학위수여)**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43조에 따른 학위수여 사정결과 통과된 자에게 대학원 학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과 및 전공별로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24.02.29.>

**제45조(학위수여 시기 및 회수)** 대학원의 학위는 매 학년도 2회 수여한다.

## 제9장 장학금

**제46조(모범학생 장학 선정 및 지급)** 모범장학은 매학기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. 이 경우 장학생 선정 및 세부 지급기준은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제10장 학생활동

**제47조(학생의 일반의무)** 학생은 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48조(학생자치활동과 지원)**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학생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.

② 대학원장은 대학의 창학이념과 사명,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.

**제49조(학생회)** ①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, 지도력과 자치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학생회의 조직·회장 등 임원의 구성 및 재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0조(학생활동의 승인)**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·개최일시·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교내에서 10인 이상이 집회를 하는 경우
2. 교내광고 또는 인쇄물의 부착 및 배부를 하는 경우
3.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의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를 하는 경우
4. 외부 인사를 학내에 초청하는 경우
5.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 <2022.01.2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<2022.06.1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02.2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5.01.23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5.06.10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5.10.1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